발굴자료 소개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鄭 景 柱
(慶星大學校 漢文學科 副教授)

目 次

Ⅰ. 序 說
Ⅱ. 東下面 古文書의 내용
Ⅲ. 東下面 古文書의 資料的 價値
Ⅳ. 結 語

Ⅰ. 序　說

지금의 釜山直轄市 海雲臺區 일원은 조선시대의 東萊府 東下面이다. 동하면 고문서는 이 동래부 동하면의 지방 자치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로서, 조선시대 해운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소상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조선후기 지방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100년 전 갑오개혁 이후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대한 문헌이 거의 멸실된 오늘에 와서 이러한 자료가 지역주민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 전통에 대한 문헌이 영성하기 이를 데 없는 부산 해운대 지역의 숨겨진 역사 문화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본디 해운대 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 해운대구지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으로 관내 문헌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1992년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이달희씨와 1993년 봄 문화계의 조경제 계장이 左洞의 노인정에 오랫동안 보관하여온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탐문하고 그 사실을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이 자료의 사회·행정·문화적 배경과 그 가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는 후일을 기약하고, 지금은 우선 그 개략적 내용을 대충 서술하고자 한다.

Ⅱ. 東下面 古文書의 내용

동하면 고문서로서 보존되어 온 자료는《東下面戶籍臺帳》1 책을 제외하고 모두 29책이다. 이 문서의 분량으로 보면 1910년 이전의 문서가 총계 383면, 이후의 문서가 87면으로 도합 470면이다.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東面下端大洞中屯畓衿記册；乾隆二十九年甲申十二月日(1764)(7면)

이 문서는 東面 下端의 大洞中에서 관장하는 국가소유의 토지인 屯畓의 위치 면적 및 소유변동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동면 하단의 大洞에서는 孫智員, 栽松員, 林谷員, 東松員 등지에 44夜(배미) 약 223負(2結 23負)의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東面下端大洞中節目册；乾隆二十九年甲申二月日改謄(1764)(10면)

이 문서는 동래부 東下面이 辛未年(1751)부터 東面에서 주민들의 自願에 의해 分面되었음과, 東下面의 風憲, 約正, 都書員, 面書員, 勸農, 驛主人, 面主人, 各 洞首 등의 각종 所任에 대한 일정한 급료(例價)와 戶籍監, 捉虎監官, 司倉直 등에 대한 뇌물(人情) 규정, 해운대 빈객과 立巖 祈雨祭 등에 동원되는 인원의 접대, 屯畓에서 거두는 收租를 每結 당 50斗로 하는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3) 搜討屯畓節目(東下面上)；道光八年戊子七月日(1828)(5면)

조선후기 고갈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현지조사하여 찾아내고 거기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田畓搜討를 행하였다. 12년 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전답수토에는 사실상 반호는 빠지고 常民의 전토가 다량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각 지방 촌락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문서는 東萊府에서 官船稅錢으로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식을 불려 12년 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전답수토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던 사실을 알려준다. 동래부에서는 辛巳年(1821) 이후로 官船을 매도한 돈 162兩을 본전으로 海四面에서 殖利하여 丁亥年이 되면서 1,070兩의 금전이 저축되자, 이 돈으로 답 106두락을 마련하고 여기서 매년 71石을 收租,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官庫에 저축

함으로써 屯畓搜討의 비용에 충당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 屯畓搜討錢으로 마련된 전답은 邑內面에 23斗落, 北面에 79斗落, 東下面에는 4斗落이 배당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東下面中完議節目册 ; 辛亥十月日(1791?)(8면)

면내의 각종 경비가 항상 모자라기에 本面의 儒林 및 각 洞員에게서 기부금을 거두어 32兩1戔6分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面內 4동에 각기 8兩4分 씩 均分하여 存本取殖하게 하여 그 利殖으로 面任의 朔紙代(급료) 매월 1兩과 그 밖의 공용 잡비에 충당하게 한다는 내용의 完文. 節目에는 면의 公會(面會)시에 잡담하는 사람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이를 징벌하는 등의 규약을 정하고 있다.

5) 栽松更付下端節目 ; 丁巳十一月(1797)(7면)

栽松洞은 본디 東下面에 소속시켰는데 중년에 일시 東上面으로 移屬하였다가 다시 東下面으로 定屬한다는 요지의 문서. 後錄으로 해운대 빈객 접대 등의 조목을 명기하였는데, 戰船修粧木 烙給과 苞伊津 津船改造伐木時曳運 등의 조목이 추가되어 있다.

6) 東下面海雲津八送使入給生鮮捧弊完文 ; (乙亥二月日)(1815?)(7면)

朝日間 公貿易으로 倭側에서 매년 오는 八送使의 접대에 소요되는 生鮮은 본디 倭公作米로 相計되었는데, 東下面에서는 동 생선 本價米 8石 12斗 2刀 5合을 받고 일정 양의 생선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산물이 귀하기 때문에 本府에서 本價米 외에 해마다 125兩을 더 지급하여 八送使 및 大差倭 漂差倭 등의 특별한 왜인사절에 공급할 때마다 생선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폐가 여전하였다. 이 完文은 海村에 거주하다 陸村으로 옮겨간(陞陸) 주민들이 그 免役의 대가로 낸 전답 8斗落의 가격 57兩과 매년 官에서 내리는 魚價米 약 8石 12斗(價錢 本利合計 150兩),

陞陸 各人이 내는 添補錢 60兩 등 도합 267兩을 기금으로 하면, 그 1년 利殖이 96兩이니, 여기에 본가미 125兩을 합하여 生鮮價로 계상하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기금을 늘리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7) 東面下端風憲擧行節目 ; 己卯正月日(壬戌本節目幷)(1819?)(7면)

일개 면의 우두머리인 風憲과 約正의 擇定과 면내 직무담당자에 대한 규약. 이 절목에 의하면 풍헌은 曾經鄕任으로 擇定하되 鄕任을 거친 자가 없으면 曾經校任 중에서 擇出하도록 하였다. 풍헌의 책무는 풍속을 바로 잡고 農桑을 권장하며 흉년의 災傷踏驗과 式年의 人口推刷 때에 풍헌이 面都監이 된다. 約正은 校生 중에서 文筆이 있고 일을 아는 자로 택정하되 風憲이 鄕廳에 들어와서 鄕所와 함께 선발하도록 하였다. 약정의 책무로는 軍丁의 有頓代望을 비롯하여 軍政과 관련된 貢布의 收合과 道路橋梁 및 還上督徵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都監이나 面都將의 직책도 나타난다.

8) 東下四洞節目册 ; 己丑三月(康熙甲午後百餘年)(1829)(18면)

이 문서는 東面 下端의 陸三洞(中洞, 右洞, 左洞)에서 海雲臺洞(海洞)과 더불어 함께 담당하고 있는 役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약조이다. 여기에는 海雲臺 遊覽客의 接待와, 萇山의 封山 烽燧 감독관의 접대, 右峴地境站의 내왕 대소 빈객의 접대, 그리고 立巖 및 海雲臺 祈雨祭 때의 祭官 下人 접대 등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 해운대를 구경 오는 사대부 빈객의 접대는 대체로 陸三洞에서 수행 下人의 접대를 담당하고, 海洞에서 鍮器, 盤器. 돗자리(鋪陳) 등을 담당하며, 그 외에 釜鼎, 沙器, 燒木, 柴炭, 使喚軍, 轎子軍, 生藁草, 馬粮, 馬太, 竹木, 大小桶瓢子 朴, 揮帳, 遮日 등의 물품과 인원을 각 동에서 나누어 분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절목은 都洞首와 右洞首, 左洞首, 海洞首의 聯名으로 작성되어 있고, 후미에 辛

未年과 癸酉年의 追節目이 추가되어 있다.

9) 東下面箭竹刈取烟役蠲減節目 ; 癸卯十二月(1783)(4면)

이 문서는 동하면에 부과된 箭竹刈取의 雜役을 감면해 달라는 面民의 요청에 대하여 辛丑 2월에 東萊府使가 감면을 인정한다고 결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箭竹刈取의 雜役은 北面과 沙川下端面, 南村下端面에도 부과되었던 것인데, 이들 3개 면에서는 使客行次時 驛卒과 下人을 접대하는 책임을 진다고 하여 먼저 감면받았고, 이에 따라 東下面에서도 해운대 유람객 접대의 명분으로 3개 면과 동등한 처분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10) 募緣文 ; 道光二十五年乙巳九月日(1845)(18면)

동하면 관내에 있는 해운대의 유람객 접대를 위하여 邑內 各廳의 인원이 해운대 인근 마을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빈번한데 그들을 용납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너댓간의 건물을 지어 面所로 이용하겠으니 소요 경비를 有志人士들이 부조해 달라는 요지의 발의문이다. 발의자는 동하면 거주의 執綱 崔斗杓, 風憲 朴春宏, 風憲 金弘奎, 掌議 朴啓茂, 掌議 宋仁賢, 有司 崔有翰 등 6인으로 되어 있다. 후반에는 栽松, 右洞, 中洞, 左洞 등 각 동리에서 3兩 내지 5兩, 風憲, 約正, 洞首, 掌議, 有司, 都監, 把摠, 千摠, 百摠, 別將, 哨官, 船將 등 각색 신분의 사람들이 3에서 2兩까지 내겠다고 약정한 기록이 있다. 1년 뒤인 丙午 9월의 會計에 의하면 여기서 수합된 금전이 모두 60兩8戔인데, 그 돈으로 동년 8월 29일에 開基하고 9월 초4일에 立柱上樑하여 海雲臺支應所를 건립하였으며, 이듬해 丁未 10월에 蘆草로 지붕을 덮고 1兩7戔을 日後 土木價로 남기고서도 14兩2戔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하튼 1846년 당시 갈대로 지붕을 덮은 초가의 海雲臺支應所가 건립되었던 것은 확인되는데, 이 건물의 정확한 장소와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탐문이 필요하다.

11) 東下面牛稅畓改量案；道光二十二年壬寅四月日(1842)(6면)

본디 동래부에서 각 동리에 農牛를 지급하여 농사를 돕고 한편 그 雇稅를 받아 民役의 경감에 보충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는데, 중년에 그 소를 팔아 미곡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다시 전답을 장만하여 운영하면서 그 전답을 牛稅畓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감에 따라 태반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다시 찾아 내어 牛稅畓의 명분을 복구하고 그 수입으로 민역을 경감하는데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후미에 첨부된 東下面牛稅畓改量案에 의하면 동하면에는 栽松里의 孫智員, 栽松員과 左洞里의 東松員과 院旨員 右洞里의 干飛烏員, 中洞里의 東松員 院旨員, 海洞里의 栽松員 干飛烏員 東松員 등에 모두 약 37斗落(價錢366兩)의 牛稅畓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12) 東下面主人雇租屯畓分授節目册；道光二十八年戊申正月日(1848)(6면)

각 면의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面主人의 雇價(급료)로 지급하기 위한 屯畓이 동래부에 모두 253斗落이 있었는데, 각 면마다 收租가 균등하지 않아 다시 주민들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시 劃定하여 民戶에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 邑主人의 雇價를 이 屯畓의 收租로 대신한다는 것인데, 동하면에 배당된 屯畓은 東上面 岳北員과 孫旨員에 있는 畓 18斗落(價168兩)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戊午年(1858) 5월에 재송, 우동, 중동, 좌동, 해동 등 5개 동에 분배된 牛價錢 378兩의 내역이 적혀 있다.

13) 東下面道路橋梁濬川修治節目；壬子六月日(1792)(4면)

동래부 관내에서 종래에 도로 교량의 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烟軍(일군)을 동원하였는데 그 폐단이 많으므로, 지금 이후로 도로보수와 하천준설은 도로변이나 하천변의 전답 경작자가 책임지고, 읍내 또는 산이나 고개의 도로 하천은 인근 동리에서 道路監官을 정하여 일체 담당하기로 해 달라는

민원을 따라 그대로 시행하기로 동래부사가 결정하여 내린 문서

14) 東下道路橋梁佃夫作者姓名成冊 ; 甲寅二月日(1754)(17면)

壬子 六月의 道路橋梁濬川修治節目에 의거하여 도로 교량을 보수하여야 할 도로 교량 하천 인근의 경작자와 그 경작자가 담당할 구역을 명시한 명단.

15) 東下面 捄弊錢取殖節目 ; 咸豊九年己未六月日(1859)(9면)

民戶 雜役에 관련된 여러가지 경비로 민폐가 많으므로 東萊府使가 1,000兩을 마련, 관내 각 면에 분배하여 그 돈의 利殖으로 補用하도록 조처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약을 정한 문서. 東下面에 劃給된 民錢은 90兩으로 책정되어 있다.

16) 海雲臺支站擧行節目冊 ; 丙寅六月日(1866)(9面)

동하면에서 담당해 온 해운대 빈객 접대와 支站 내왕 대소 別星의 접대의 일에 있어서 재송동은 거리가 조금 멀어서 예전부터 租3石 또는 牟租5石을 陸三洞에 주어 대신 거행하게 하였는데, 이들 간에 서로 공평치 못하다는 불평이 있어서 이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面會에서 面任이 만든 약정서. 이 일은 栽松洞에서 100냥을 기금으로 내는 대신 陸三洞에서 그 돈을 殖利하여 비용에 쓰고 그 일을 전담하기로 하는 한편, 都洞(面任所在洞)의 업무는 栽松洞을 제외하고 육삼동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임. 약정서는 栽松, 左洞, 右洞, 中洞의 頭民 각 2인과 面首의 서명 手決로 마감되었다.

17) 東下面衙舍修理時例捧錢釐革節目 ; 同治六年十一月日(1867)(7면)

동래부에서는 신임 부사가 부임하면 관아 건물을 수리하는데 그 비용을 西面, 東平, 釜山鎭, 東上, 東下 등 5개 면에서 18兩씩 차례대로 돌아가며 거두어 낸 전례가 있었던 바 내었던 바, 이 일이 근거가 없고 앞으로 지

탱하기 어려우므로 관아 수리기금을 마련하기로 변통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東上, 東下 2개 면에서는 이미 차례대로 추렴 지출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 아직 차례가 닿지 않은 西面, 東平, 釜山鎭 3개 면에서는 미리 18兩을 내면 합계 54兩인데, 이를 布商廛에 주어 年利 3割로 식리하면 1년 이식이 16兩2이 되므로 이를 비축하여 앞으로 있을 관아 건물 수리비용에 충당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東萊府使가 작성하였다. 말미에 동하면에서 衙舍修理費用으로 납입한 18兩을 영수하였다는 尺文이 첨부되어 있다.

18) 東萊府東下面 弊節目 ; 光緖三年丁丑十月(1877)(4면)

暗行御使가 東萊府에서 査徵한 11,000兩을 각처에 분배하여 민폐의 만분의 일이라도 덜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분배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19) 東下面籍弊釐正節目册 ; 己卯閏四月日(1742, 1759 ?)(8면)

3년마다 한번씩 改修하는 戶口帳籍을 정리함에 있어서, 書寫를 맡은 사람들이 戶口單子를 내는 각 民戶로부터 分單債로 5分에서 2錢까지 받아들이는 외에 封單療飢債 등이 있으며 또 동네마다 다니면서 酒食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일체의 그릇된 관습을 혁파한다고 동래부사가 告示한 傳令을 절목으로 만들어 각 면에 내린 문서임. 이에 의하면 戶籍書寫員은 각 면에 임의로 나갈 수 없고, 封單의 관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草單, 正單의 단자 이중 제출을 폐지하며, 分單債를 每戶 5分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20) 猪糠羔太穀各廳馬粥價防給節目 ; 壬午閏五月(1762)(14면)

東萊官에서 국가 수용을 위해 기르는 돼지와 염소 및 말의 사료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용규정을 정한 절목. 동래관에서는 돼지 50마리와 염소 70마리가 관아 소용으로 사육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될 사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전650냥을 마련하고 그것을 각 면에 나누어

식리하여 그 이식으로 사료비에 충당하는 한편, 해마다 늘어나는 돼지와 염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를 관에 바치되, 관에서는 정수 외의 가축을 당해 연도의 소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팔아서 후일의 수용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동하면에 분배된 기금은 26兩5戔으로 되어 있다.

21) 東面下端官牛節目 ; 乙酉閏二月(1765)(32면)

동래부사가 東萊官의 農牛가 돌림병으로 많이 斃死하여 농사에 지장 있음을 알고, 農牛 51頭를 官費로 사서 관내 각 촌에 나누어 사육, 사용하게 한 절목. 官牛 사육의 책임과 관리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東下面에서는 재송, 좌동, 우동, 중동, 해동 각리에 한마리씩 배당되었는데, 말미의 기록에 의하면 중동을 제외한 네 마을에 다시 4마리의 송아지가 생산되어 모두 9頭가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22) 東下面灌川錢捉弊節目 ; 光武二年四月日(1898)(5면)

관내 하천의 정기적인 濬渫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하여 1,000냥의 기금을 마련, 이를 각 면에 분배 殖利토록 한 절목. 동하면에는 70兩이 배당되었다.

23) 東下面捉弊錢節目 ; 光武五年辛丑九月(1901)(8면)

동래부의 민호에 부담되는 각종 잡역의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래부사가 1,250兩의 기금을 마련하여 각 면에 나누어 殖利 사용토록 한 절목. 동하면에 100냥이 분배되었다.

24) 東下面 戶籍台帳 ; 隆熙二年(1908)(1册, 391면)

25) 萇山神堂重建募緣文 ; 中元甲子年六月日(1924)(4면)

左右中 3동에서 장산의 신당을 중건하기 위하여 발의한 발의문. 3동의 區長과 각동 위원 등 7인의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1년 뒤인 乙巳年에는

上山祭堂修理推進委員會가 구성되고 工事監督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26) 萇山神堂讚助錄 ; 中元甲子季夏(1924)(31면)

위의 募緣文에 따라 神堂의 중건모금에 응한 178명의 명단이다. 甲子年 이후로 乙亥丙子年 이후 壬子年까지 追加寄付者芳名錄이 追錄되었다.

27) 萇山神堂祭需金殖利錄 ; 丁酉年六月等續記(1957)(52면)

萇山 神堂의 祭需 剩餘金 會計册(현재까지).

28) 己未十月大洞中改案(1754～1910) 大洞中格外案(1883～1906), 大洞中新改案(1898～1910)(도합 163편)

東下面 洞員의 入參 명부, 大洞案과 格外案의 두 종류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Ⅲ. 東下面 古文書의 資料的 價値

동하면 고문서의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동하면의 총체적 자치행정규범으로서의 洞中節目, 完議節目 등의 문서와, 동하면의 토지조세 및 재정문제와 관련된 屯畓衿記, 量案捉弊錢殖利節目 등의 문서, 그리고 동하면 소재 神堂과 관련된 경비 운영 문제를 다룬 문서 등이 그것이다.

1) 동하면의 연혁과 자치규약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동하면의 자치규약과 관련된 몇 종류의 절목책들이다. 이에 관련되는 고문서는 〈己丑三月東下四洞節目册〉, 〈辛亥十月東下面中完議節目册〉, 〈栽松更付下端節目册〉, 〈東下大洞中節目册〉,

〈東面下端風憲擧行節目〉, 〈海雲臺支站擧行節目册〉 등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東下面의 面任인 風憲, 約正 등 자치조직의 구성문제와, 해운대 유람객 접대나 葺山 烽燧와 封山 및 驛站 등 東下面에서 담당해야 할 각종 공공업무에 대한 자치규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동하면의 연혁

이들 문서에서 우선 살필 수 있는 것은 東下面의 연혁이다. 조선시대 동래부 東下面의 존재 여부는 다른 기록에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1740년에 편찬된 《東來府誌》(東萊區誌 所收) 坊里條에는 東面 소속으로,

> 鳴藏里 盤如里 栽松里 海雲臺里 右洞里 中洞里 左洞里 地境里 石臺里 新川里 西洞 五倫臺里

등 12개 동이 열거되었고, 1871년에 편찬된 《嶺南邑誌》에 수록된 《東來府邑誌》의 坊里條에는 邑內面, 東面, 南村面, 西面, 北面, 東平面, 釜山面, 沙上面, 沙下面 등 9개 면에, 東面 소속 부락으로

> 鳴藏里 西洞 絲川里 北洞 東臺里 五倫臺里 石臺里 盤松里 盤如里 舞亭里 栽松里 右洞 中洞 左洞 海洞

등 15개 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동래부 관내 각 동리에 分給된 官牛의 마리[隻] 수를 기록한 乙酉年(1885년)의 〈東面下端官牛節目〉에는 邑內面, 西面, 北面, 沙川上端面, 沙川下端面, 東面上端, 東面下端, 南面, 釜山面, 東平面 등 10개 면이 구분되어 있고, 동면 상단과 하단 소속 동리로,

> 東面上端 ; 書洞里, 新川里, 五倫里, 石乙臺里, 盤松里, 盤如里, 舞亭里, 東面下端 ; 栽松里, 右洞里, 中洞里, 海洞里

등이 나열되어 있다. 동하면 고문서의 다른 절목에도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東下面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동래부 東面이 상단과 하단으로 분면

되고, 東面 下端이 일개 면이라는 자치단위로 지속되면서 東下面으로 통칭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면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己丑年東下四洞節目册〉에 의하면 '流來 完文이 康熙 甲午年(1714)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乾隆29년 甲申(1764)에 改謄한 〈東下大洞中節目册〉에는 栽松里, 右洞, 中洞, 左洞, 海洞 등 5里가 東面 下端으로 주민들의 自願에 의하여 分面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전해오던 完文을 상고해 보니 康熙 甲子年에 만들어 둔 것인데, 연수로 헤아리자면 거의 백년이 되었다. 책장이 이미 빠지고 글자도 희미해져서 만에 하나도 살펴볼 길이 없다. 예전대로 보완하여 다시금 수정한다. 流來完文相考則康熙甲子成置 而年數計之則幾至百餘年矣. 册丈已缺 文字微 萬無考 之路依舊補益 更爲修正爲去乎 〈己丑三月東下大洞中節目册 第1葉〉

○ 이 면과 상단면이 合面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는지 상세하지 않지만, 거리가 매우 멀어 매사에 어긋나는 폐단이 있어서, 신미년부터 자원에 따라 分面하고 각기 제 役을 담당하기로 한다. 此面與上端合面 詳不知幾年 而相去至遠 每事有相左之端, 辛未年從自願分面 各役其役 〈東下大洞中節目册 第1葉〉

○ 본 면이 당초 상하단으로 분면할 때 재송 한 동네는 다섯 동네와 아울러 합하여 한 면으로 하였다. 중년에는 재송 한 동네를 상단면으로 옮겨 붙였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금 가까운 곳에서 官司에 청원함에 따라 다시금 하단면으로 붙여 예전대로 한 면으로 한다. 本面厥初上下端分面之日 栽松一洞 幷以五洞 合爲一面矣. 中年良中 栽松一里 移附於上端面是如可 于今復從附近 呈于官司而更付於下端 依舊爲一〈栽松更付下端節目册 第1葉〉

康熙 甲午年(서기1714)에 만들어 둔 完文이 전해 온다고 하였고, 〈東下大洞中節目册〉의 第1葉에 '乾隆二十九年甲申二月改謄'이라 하여 전해오던 절목 책이 낡아서 건륭 29년(1764)에 옮겨 적었다고 하면서 辛未年부터 自願分面 하였다고 하였다.

두 문서에 모두 상단과의 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한 조목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숙종 40년(1714)에 만들어 두었다는 완문은 동하면의 완문이라고 짐작된다. 辛未年에 分面하였다고 하는 것은 〈東下大洞中節目册〉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면의 상단과 하단이 중년에 일시 합면되거나, 하단 소속의 재송동이 일시 상단으로 소속되는 등 행정구역의 일시 변동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하면은 적어도 숙종 17년(1691, 辛未)에 분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東下面 소속의 洞里는 여러 명칭이 나오지만 대개 栽松洞을 비롯하여 左洞, 中洞, 右洞, 海雲臺洞 등 5개 동이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동리는 지역에 따라 陸洞, 海洞, 陸三洞, 海三洞 등 몇 가지로 명칭으로 구분되어 불려지기도 하였다. 가령 〈東下四洞節目册〉(1829)은 都洞首, 右洞首, 左洞首, 海洞首 등 4개 洞首의 聯名으로 작성되었고, 〈東面下端大洞中節目册〉(1764)의 節目 중에,

○ 立巖 祈雨祭는 栽松洞이 전담하고 下四洞은 거행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여기서 下四洞은 中洞을 首洞으로 하여 右洞, 左洞, 海雲臺洞(海洞)을 지칭한 것이고, 陸三洞은 중동, 좌동, 우동을 지칭한 것이다. 陸三洞과 별도로 海三洞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東下四洞節目册〉(1829)의 절목 중에,

○ 海三洞(靑沙, 禿浦, 海雲臺)은 원근에 따라 靑沙 禿浦는 매호 4분식, 해운대 1리는 매호 2분씩 收合한다.

라고 하여 靑沙, 禿浦, 海雲臺를 海三洞으로 구분하였다. 또 그 절목의 후미에,

○ 陸三洞과 靑沙 尾浦 두 동리에서는 每戶 文3分을 收合하여 山任에게 備給하게 함

라고 하여, 陸三洞과 靑沙, 尾浦 두 자연부락을 구별하였다.

재송동과 우동, 중동, 좌동, 해운대동, 청사포, 미포 등의 지역은 곧 오늘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오늘날 해운대구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반송동, 반여동 등 과거 東上面에 해당된 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거 동하면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래부 동하면과 일정한 지리적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風憲, 約正의 임용과 자치규약

조선후기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위하여는 지방유지로 구성된 행정자문기관인 향청과 일정한 연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향청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한 고을을 鄕班을 대표하는 향청의 座首 別監을 중심으로 각종 有司가 있고, 각 면의 책임자로 風憲과 約正, 각 동리의 우두머리로서 洞尊位, 洞首가 있었다. 근래에 와서 향청과 향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지방자치조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면 단위 이하의 자치조직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밝혀지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동하면 고문서는 면 단위의 자치조직의 구성과 규약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중 〈東面下端風憲擧行節目〉 (1749)은 면 단위에 자치조직의 책임자인 風憲, 約正 등의 직무와 임용규정을 밝힌 것으로, 향약 등을 통하여는 잘 알 수 없었던 조선후기 면 행정의 실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는 말미의 동래부사 手決에서 확인되듯 官에서 작성되어 동래부 관내 각면에 배포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에 의하면 면 책임자로서 風憲 1인과 約正 1인을 두는 것이 지방관의 행정 위임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읍에 각 면이 있는 것은 나라에 각 도가 있는 것과 같다. 한 면 안에는 風憲이 있고 다음으로 約正이 있으며, 그 아래로 사역하는 자가 있고 有司와 勸農이 있다. 풍헌이란 곧 일개 면의 官憲이다. 풍속과 기강에 여기에 달려 있고 백성의 풍습을 징벌하고 권장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 소임을 하는 자로는 진실로 그 사람의 재질과 신분을 잘 선택하여야 하겠거니와, 관청에서도 마땅 히 한 면의 중책을 맡겨서 면민으로 하여금 존경하며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여야만, 관청의 명령이 거행될 수 있고 풍속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邑之有各面 有國之有各道也・一面之內 有風憲焉・其次有約正焉・其下之供使喚者 有 有司勸農焉・風憲也者 便是一面之官也・風綱之所關係在此 民習之所懲勸在此 爲此任者 固宜審擇其人之才地 而自官亦當委任以一面之重 使面民之所矜式 服其威令 然後官令可以擧行 風俗可以糾正是如乎.《東面下端風憲擧行節月》第一葉

鄕廳 所任을 거친 사람 중에서 천거하는 風憲 1인과 校任 출신의 約正 1인, 그 외에 都書員, 面書員, 勸農 등의 소임이 있었다.

그들 외에도 洞首, 公事員 외에 각종 有司 등의 소임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임용에는 일정한 差例價를 받았다. 差禮價란 감투를 맡은 이가 감투의 댓가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물론 이들은 조선후기 향약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행정의 한 단위들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관헌이 아닌 채로 면의 재정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러한 대가의 명목을 朔紙 또는 朔價라고 하였다. 이러한 삭가의 명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목이 있어서 일정하게 제한되었지만, 그 병폐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 외에도 驛主人, 面主人 등 일정한 업무대행자가 있었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例價가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최소단위로서 洞首와 面任, 風憲, 執綱, 面主人, 驛主人 등의 상호관계에 책무 기능 등에 대하여도 이들 문서 중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은 시간을 두고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동하면의 民役

〈동하면고문서〉에 나타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후기에 있어서 東下面의 社會的 文化的 기반이 海雲臺라는 명승지와 封山 烽臺를 가진 장산 아래의 국방의 요충이라는 두가지 점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東下面 바닷가의 海雲臺에는 예전부터 경향 각지의 사대부 빈객들의 유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관광을 위한 제반 편의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제공되던 시대였으므로, 유람하는 사대부들로서야 일시의 유흥이지만 주민들로서는 각종 빈객의 왕래 접대를 감당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여러종류의 節目에는 이러한 유람객의 접대라는 주민공동의 책무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여러가지 약조들을 담고 있다.

○ 우리 三洞은 한 모퉁이에 있어서 출입함에 서로 벗을 삼고 길흉사에 서로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중에, 앞으로는 海雲臺라는 영남의 명승지가 있어서 어진 사대부들이 경치 구경차로 자주 왕래하고, 서편으로는 封山과 烽火臺가 있어서 虞侯 사또가 순찰할 때와, 本府와 水營에서 종종 그곳 裨將을 보내어 감독하게 할 때, 그리고 右峴의 地境站에 대소의 빈객이 왕래할 떠 거느리고 오는 하인들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三洞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거행하는데, 보전해 나가기가 어렵지마는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惟我三洞 居在一隅 出入相友 吉凶相助 董董資生之中 前有海雲臺 嶺南名勝之地是等 賢士大夫 翫景次頻數往來是遣 西有封山烽臺 虞侯道巡歷時 及本府水營種種使其裨將摘奸時 及右峴地境站 大小賓客往來之時 所率下人支供等事 三洞之民 合力擧行 難堪其保 恨之奈何.《己丑三月東下四洞節目册》

유람객의 접대 책임는 대개 인력의 동원과 기물의 제공에 한정되었다. 예컨데,본부의 東萊府使가 海雲臺 翫景할 적에 그 下人의 접대(支供)는 陸三洞이 擔當하고 鍮器, 盤器, 돗자리[鋪陳] 등은 海洞에서 담당하고, 순찰사나 京差官, 兵使 등의 海雲臺 翫景時에는 차일, 솥, 사기, 땔감, 使喚軍, 轎子軍, 使令, 軍牢, 生藁草, 馬粮, 馬太 등은 陸三洞에서 분배 담당하고,

草鋪陳, 帳幕, 遮日, 竹木, 鍮器皿, 匙箸, 盤器, 大小桶瓢子朴, 下卒 접대는 海洞 3里가 담당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운대의 사대부 유람객 접대는 동하면 5개 동이 모두 담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재송동과 같이 해운대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재송동에서는 일정한 기금을 내어 해운대 유람객 접대를 위한 잡역을 면제받고 이후로 재송동을 제외한 육삼동이 순차로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都洞(面所在洞)의 업무거행에 있어서도 재송동을 제외하였다. 이 약조를 정식화 한 것이 〈丙寅六月海雲臺支站擧行節目册〉이다.

o 재송동은 해운대와는 길이 조금 간격이 있어 해운대 지참의 일을 거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민폐는 없다.……지금부터는 해운대 지참과 都洞의 일을 거행하는 데 재송동은 거론하지 말고, 삼동에서는 이 100냥으로 별도로 담당자를 정하여 방편대로 이식을 취하여서 이 실효가 있게 되면 서로 다투는 폐단이 없게 되고 서로 이로울 도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栽松之於雲臺道里稍間 支站擧行 有難無弊是如……玆以後 雲臺支站及都洞擧行段栽松則勿擧論是遣 三洞則 以此壹百兩錢 別定句管 從方取殖 斯有實效則 必無相較之端 而必有胥利之道矣.〈丙寅六月海雲臺支站擧行節目册〉

기금 100냥을 내어 놓고 그 대신으로 해운대 빈객접대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재송동에 대하여 都洞 업무의 거행도 맡길 수 없다고 약정한 조목에서, 동하면에 있어서 해운대 빈객 접대 잡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해운대 유람객 접대 잡역은 조선왕조의 신분제도 하에서 주민들에게는 여러가지로 큰 민폐를 끼쳤음은 물론이다. 유람객에 대한 접대의 잡역에 일정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일방적인 사역이 강요되고 있었으니. 해운대 인근 마을의 주민은 이런 잡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추세였다. 도광 25년(1845)에 해운대 유람객 접대를 위하여 面舍를 건립하였던 것은 이

러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곳 해운대는 한 도의 요충지이자 두 읍 사이에 있어서 대소 관리 행차의 송별에는 반드시 올라오므로 이 일을 불시에 거행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그것도 당일이면 그만이다. 觀察使가 오거나 兵使가 오게 되면 본부의 각 관청 인원들이 그 전날부터 하루 밤을 머물러 숙박하기에 支站이 되었다. 이전에 해운대 뒤의 촌락이 한창 번성할 때에는 어려움 없이 밤을 지내었지마는, 목하 지금에는 동네가 모두 폐허가 되고 사는 주민이 점차 줄어들어 달팽이집 같은 오두막에서는 전혀 조금이라도 수용할 장소가 없다. 반드시 面舍 너댓 간을 지어야만 걸끄러운 폐단이 없을 것이다. 惟此海雲臺 一路之大枕 兩邑之交 大小官行 送即必登 不時擧行 罔知攸措 而當日而已. 棠車柳鉞 宣令下臨 則本府各廳人員 其前日 留宿一夜 以爲支站 而比前臺後村閭 全盛之時 無撓經夜矣 目今閭里俱墟 居民漸凋 蝸屋斗室 頓無少須臾相容之道 敢望一晝夜經過之處乎. 必作面舍四五間 然後庶無生梗之端.《乙丑九月日 募緣文》

불시에 찾아드는 관인들의 행차는 물론 동래부와 수영 또는 경상도 관찰사나 병사 등의 행차에는 공식적인 수행 인원만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面舍를 지을 이 당시 이전에 이들 수행인원들이 인근 민가에 그대로 투숙했다고 하니 그 민폐 또한 적지 아니했을 것이므로, 주민이 날로 감소한다고 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해운대 빈객 접대의 문제 외에 동하면의 공적 행사로 중요한 것은 封山의 伐木과 立石 및 海雲臺의 祈雨祭 문제였다. 뒤로 封山 및 烽臺가 있고 뒤로는 驛站이 있어서 京鄕의 사대부와 본부의 東萊府使 및 左水營의 節度使, 虞侯 등의 干飛烏 烽燧가 있는 萇山은 국가에서 소용되는 재목을 공급 받기 위하여 입산을 금지하는 封山이었다. 따라서 이 봉산의 감독관인 山任과 통제영 및 좌수영에서 파견되는 관리인 虞侯를 접대하는 것이 동하면의 큰 부담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封山에 본부와 수영에서 將校가 摘奸하러 올 때 접대는 각 동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하였지만, 땔감을 뒷산에서 직접 조달해야 하는 형편에 봉산의 출입을 감독하는 山任의 존재는 주

민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己丑三月東下四洞節目册〉의 후단에 추가되어 있는 〈辛未十二月十五日改節目〉은 이러한 산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山任의 朔價는 소나무가 많을 때에는 매 달 간혹 3, 4兩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요즈음 와서는 흉년이 든데다가 봉표도 모두 엉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면의 재력도 결핍되었다. 그러므로 동 산임의 삭가를, 매 달마다 적발해내는 것이 있는 달은 2냥씩 지급하고, 적발한 게 없는 달은 1냥씩 계산하여 준다는 뜻으로 공론을 따라 다시 결정하는 바, 일후에 만약 더 징수하는 임원이 있으면 동 朔價를 교체될 때까지 한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나니 영구히 준수할 것. 山任朔價良中 松株之多有時 每朔或三四兩題給矣. 自今以來 年値凶荒 封標蕩疎分叱除良 面力亦乏 故同山任朔價 來壬申年三月爲始 每朔有摘奸 則貳兩式爲定是遣 無摘奸則壹兩式計給之意 更爲從公論規定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加徵之任 則同朔價限遞改勿給之意 永爲遵行事.〈己丑三月東下四洞節目册〉

山任의 朔價[월급여]란 본디 공식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산임에게 삭가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은 人情[뇌물]이기 때문이다. 봉산에 솔이 많을 때는 집집마다 산임에게 적발되지 않을 리가 없기에 삭가가 2냥이었다가, 산에 솔이 없어지니 솔을 베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줄어들었기에 삭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의 사대부 유람객의 접대나 봉산 봉대의 감독관에 대한 접대 등은 동하면 지역이 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부과되는 특수한 民役이었다. 이외에도 屯田의 관리, 津船의 운영 문제, 民庫의 殖利에 관한 각종의 수렴, 戶籍 式年의 奉單과 관련된 收單金 등 일반적인 부담금과, 箭竹을 베어 바친다든지[箭竹刈取], 도로와 교량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민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기　　타

동하면 고문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는 문제는 그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조선후기 면 단위 지방행정의 일반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면의 재정문제 하나와, 해운대 지방의 특수한 민속의 하나로서 萇山神堂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로 한다.

동하면의 공유 토지와 재정에 대한 문서로서 屯畓衿記 등은 동하면에서 관리하는 각종 屯畓과 殖利의 本利錢 등 각색 명목의 규약을 정한 것이다. 〈東下面牛稅畓改量案〉(1842)은 각 면에서 농사에 필요한 농우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기금을 나중에 잡역 경비에 보충하도록 변통한 전답과 금전의 殖利 규정을 적은 것이고, 〈東下面主人雇租屯畓分授節目册〉(1848)은 동하면의 면소가 있는 곳에 각종 빈객의 접대를 맡은 面主人에게 줄 代價로서의 雇租를 공동부담하기 위한 기금으로서의 屯畓을 정리 기록한 것이다.

이들 문서에 의하면 東下面의 재정은 牛稅畓 약 37斗落, 面主人雇租屯畓 18斗落, 大洞 屯畓 약 223負의 토지 收租와, 咸豊 9年의 捧弊錢 90兩, 光武2년의 瀼川捧弊錢 70兩, 光武5년의 捧弊錢 100兩 등의 각종 금전의 殖利, 그리고 〈東下面衙舍修理時例捧錢釐革節目〉(1867)이나 〈東下面道路橋梁瀼川修治節目〉(1792) 등에서와 같이 주민 각호에 균등부담하게 하는 戶錢 등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萇山神堂과 관련된 몇 건의 문서는 한일합방 이후의 문서이다. 여기서 장산 신당의 당제와, 동하면 시절 기우제를 지내던 立石(혹은 立巖) 神堂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의 동하면 고문서에는 萇山神堂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나, 한발이 들 때 재송동 뒷산의 立石에서 기우제를 지내왔다는 것은 수시로 나타난다.

재송동 뒷산 立石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밥짓는 등의 일은 면내 5개 동이 합력하여 거행해 왔으나, 壬申年 가뭄이 들었을 때 齋所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관가에 고하여 변통할 즈음 大洞에서 분간한 節目 가운데, 立石 기우제는 재송동이 담당하고 해운대 기우제는 下四洞이 담당하다고 하였음. 栽松後山立石祈雨祭時擧火等事 面內五洞合力擧行矣 壬申年旱災時 齋所自有紛亂 告官變通之際 自大洞中分揀節目中 立石祈雨祭 栽松一洞擔當 海雲臺祈雨祭 下四洞擔當爲齊〈己丑三月日東下四洞節目册〉

여기서 재송동 뒷산의 立石과 海雲臺에서 거행되었던 기우제는 재송동과 하사동이 나누어 분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정시대 이후 장산 신당의 당제는 좌동, 중동, 우동 등 이른바 下三洞이 주관하였으므로, 재송동이 전담해 왔던 입암의 기우제와는 일정하게 구별되는 듯 하다. 1924년에 작성된 〈萇山神堂重建募緣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장산은 본군 내의 거대한 명산이다. 수백년 전에 산 아래 좌동 중동 우동 세 동에서 신당을 조용한 곳에 창건하여 매년 정월과 유월 두 차례에 세 동네에서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모셔왔다. 萇山本郡內鉅大名山也・自數百年前 山下左右中三洞 創建神堂于靜寂處 每年正六兩月 三洞致誠行祭.〈萇山神堂重建募緣文〉

장산 신당이 下三洞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매년 정월과 유월 두번씩 정기적으로 堂祭가 있어 왔다는 말이다. 중건한다는 것도 이미 있는 건물이 낡았기에 다시 고쳐 짓는다고 하였으니,그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재송동 쪽의 기우제를 지내던 입암과는 선뜻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동하면 고문서가 이 신당의 문서와 같이 전수되어 왔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곳 父老들의 증언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좀더 자세한 고찰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고유한 제도가 파괴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적 결속은 지방행정이나 제도에 관여되는 것보다도 이러한 고유의 민간신앙을 고수하는

곳에서 나타났던 것이 실이고 보면, 동하면 고문서의 보존이 장산신당 제의의 전승과 반드시 일정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Ⅳ. 結　語

19세기 말 갑오개혁 이후로 우리의 사회제도가 급격하게 단절되면서 우리는 심각한 문화적 단절을 겪어 왔다. 고유의 정치적 제도적 관습은 물론 사소한 예의범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변혁에 휘말려 재래의 문화와 제도를 제대로 반성하거나 계승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각 지방에 산재하였던 여러가지 제도적 문화적 유산들도 100여년 세월 동안 거의 망각의 저쪽에서 깡그리 산실되어 갔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전통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었던 사회적 제도적 특수성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탐구 목표에 항상 장애가 되었던 것은 자료의 빈곤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방 행정사료는 거의 산실되어 남아 있는 것이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東萊府東下面古文書〉는 조선시대 면 단위의 公用文書로서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에 유사한 조선후기 지방행정자료로 〈金海府下界面古文書〉(1993,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刊)가 알려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東下面古文書〉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의미있다. 첫째는 부산·동래지방의 조선후기 역사와 사회 문화를 상고함에 있어서 전에 없었던 소중한 자료라는 점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기왕에 이 지역의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널리 이용되어 온 《東萊府邑誌》나 倭館 관련의 자료들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특수한 행정 사항이나 민간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지역의 지역사를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문헌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위에서 누누히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조선후기의 지방자치행정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면 단위의 공용문서로서 매우 희귀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그동안 향약이나 동약의 연구를 통하여 얼마간 논난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풍헌, 약정 등의 역할분담과 그 직책에 대하여 보다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해운대 유람객의 접대문제는 근대에 들어 관광이 주요한 상품가치의 하나로 등장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인구를 유인하는 요소의 하나로 반전되었고, 封山 烽燧의 감독은 왕조의 몰락과 함께 없어졌다. 그러나 관광 유람지로서의 해운대의 명성은 전보다 더 높아졌고, 기우제의 옛 풍속은 萇山神堂의 洞祭로 이어지고 있으니, 해운대의 관광지로서의 특성과 그 특성에 부수된 여러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려한 주민의 오래된 공동체 의식이 오랜 역사속에 배태되어 온 사실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문서들을 총괄하여 말하자면, 모두가 조선후기 동래부 동하면의 公用文書들이다. 이 문서를 통하여 동하면의 역사와 자치규약은 물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동래부의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거니와, 조선후기 면 단위의 일괄문서가 이처럼 보존되어 있는 유례가 거의 없다는 데서 더욱 소중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여기에 간략히 소개한 동래부동하면고문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용한 문헌자료이다. 이 자료가 해운대의 鄕父老들에 의해 이제까지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이 자료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연구와, 이 고문서를 영구히 보존하고,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고문서가 더 이상 散失되기 전에 收合할 방도를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